

엔진구성품에 대한 제조자승인 삭제

■ 주요 개정 사항 요약

관련 규칙	시행 일정
5편 1장 301. 2항 및 2장 211. 1항 (1)호	2021년 7월 1일 이후(증서 신청일 기준)

■ 주요 개정 사항

○ 개정 사유

1. 현재 우리 선급에서는 UR M72(2016.7.1 시행)에 따라 엔진구성품에 대하여 제조자증서(Work Cert.)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제조자증서(W)를 인정받는 선행조건으로 제조자승인(MA) 또는 QA 등을 요구하고 있음.
2. 제조자증서의 인정 전제조건(제조자 승인)은 UR M72에 없으며 NK를 제외한 타선급의 경우 제조자증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
3. 엔진구성품에 대한 제조자증서(W)를 인정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제조자승인(MA) 요건을 삭제하도록 함.

○ 개정 사항

1. 제조자증서(W)를 인정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지침 6장에 따라 제조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됨>
2. 기관 제조자는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지침 6장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조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됨>

○ 영향 분석

- ✓ 안전,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또는 기여
: N/A
- ✓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
: N/A